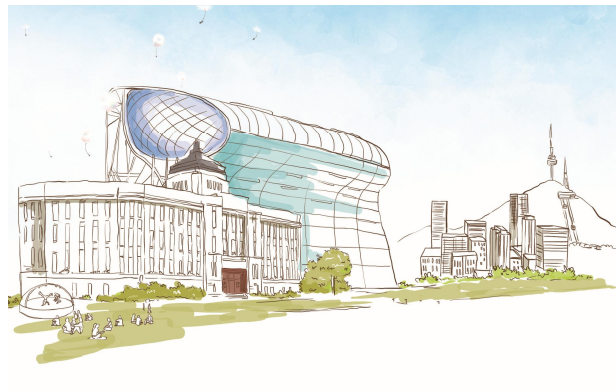


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3416	시 민			
결재일자	2014.2.17.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마형민	조미선	성은희	02/17 조현옥
방침번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2014년 상해 및 배상보험 단체가입 계획



(2014. 2.)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사건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이 해 당 사 자 : 유 ■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무 <input type="checkbox"/>
	●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음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 법 령 규 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영유아보육법) 무 <input type="checkbox"/>
	●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홍보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타 자 원 의 활 용	●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 관 계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민 간 단 체 : 유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무 <input type="checkbox"/>
	● 시 산 하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2014년 상해 및 배상보험 단체가입 계획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 상해 및 배상보험을 단체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균일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학부모 및 어린이집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I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균일한 보상체계 마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따른 어린이집 공제료 납부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함

□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 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서울시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 시장은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추진 실적

○ 과년도 가입현황

구분		'07년이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가입		어린이집 개별가입	서울시 단체가입					
공제료 부담	배상	어린이집	서울시					
	상해	학부모						
보험사		어린이집 선정	지방재정공제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소요예산 (1인당)		어린이집별 상이 (10,000원)	761백만원 (4,074원)	883백만원 (4,620원)	919백만원 (4,733원)	928백만원 (4,792원)	1,032백만원 (4,918원)	1,136백만원 (4,918원)
공제지급		과약안됨	1,431건 448백만원	2,167건 414백만원	2,453건 1,121백만원	2,787건 958백만원	2,801건 591백만원	4,106건 689백만원
보장내용		어린이집별 상이	사망 2억원 치료비 5백만원	사망 4억원 치료비 5백만원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 2013년도 유형별 보상현황

- 보장기간 : 2013. 3. 1. ~ 2014. 2. 28.
- 보상현황 : 4,106건, 689,419천원('14. 1월말 기준)
- 주요 보상현황

사고유형	계	넘어짐	부딪힘	꼬집음	긁힘	기타
건수	4,106건	1,490건	830건	220건	218건	1,348건

II 2014년도 지원계획

□ 가 입 개 요

- 가입대상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등원 영유아(244,338명)
 - 신규 인가 어린이집 및 영유아는 어린이집 인가일로부터 자동가입
- 가입방법 : 자치구별 공제계약
- 보장내용
 - 영유아 상해 및 배상
 - 돌연사증후군 특약(신규)

※ 돌연사 발생 건수가 최근 4년간 5건 발생(10년 3건, 12년 1건, 13년 1건)하여 보장의 필요성 증대

<상해담보>

- 공제증권(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이 보육중인 영유아
-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365일 한도)

<배상책임>

- 공제증권에 기재된 시설 및 시설장,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제3자 및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
- 대인배상 1인당 4억원(1사고당 20억원), 대물배상 5백만원 한도
- 돌연사증후군 4천만원 및 음식물배상책임(위탁급식 제외) 포함
- 형사소송지원금(300만원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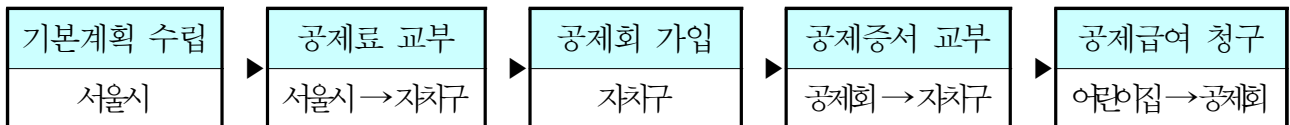
※ 자기부담금 대인·대물 각 10만원 부담

<돌연사증후군 특약>

-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시 영유아배상 및 상해보장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8천만원 보장

- 공제기간 : 2014. 03. 01. ~ 2015. 02. 28.
- 공 제 료 : 1,218,021천원(자치구별 원단위 절사)
 - 영유아아동 : 1,175,013천원(240,289명×4,890원)
 - 방과후아동 : 16,156천원(4,049명×3,990원)
 - 돌연사증후군(특약) : 26,867천원(244,338명×110원)

- **보 험 사**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영유아보육법 제31조 2에 의거 설립)
 -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지원절차**



III 행정 사항

- **2014년 상해보험료 학부모로부터 수납금지**
 - 일부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입학비용으로 상해보험료를 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
 - 자치구별 단체가입된 사항으로 학부모에게 상해보험료 수납하는 일 없도록 어린이집에 홍보
- **가스사고배상책임·화재보험 등 의무보험은 어린이집에서 별도 가입**
- **기타 보험추가 필요시는 시설별 자체가입(보험료는 시설부담)**
- **어린이집에 단체가입 안내 철저(특히, 신규인가시설 안내 철저)**
- **공제사고 발생시 회원 미가입 어린이집의 경우 회원가입비 납부 후 보상가능(어린이집 안내 요청)**

붙임 : 1. 공제상품 단체가입서(안) 1부.
 2. 자치구별 공제료 산출내역 1부. 끝.

【붙임 1】

공제상품 단체가입서(안)

제 1 조 (가입의 목적)

본 가입은 ○○구가 제 2 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공제 상품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계약내용)

계 약 내 용	가입자	서울시 ○○구
	지원대상	서울 자치구 전체 어린이집 (신규인가 어린이집 포함)
	보장기간	2014년 3월 1일 ~ 2015년 2월 28일
	보장내용	<p>○ 영유아 배상책임 및 상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담보 :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 - 배상책임 ① 대인배상 1인 4억원(1사고당 20억원)한도, 대물 500만원 ② 돌연사증후군 4,000만원, 자기부담금 각 10만원 ③ 음식물배상책임담보 포함(단,외부급식업체 이용시 제외) ④ 형사소송지원금 300만원 한도 ⑤ 자기부담금 대인 대물 각 10만원 <p>○ 돌연사증후군특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시 영유아 배상 및 상해 보장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8천만원 보장
납입공제료	₩ 000,000천원	

제 3 조 (가입조건)

○ OO구는 납입공제료를 하단에 명기한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명
100-025-692690	신한은행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공제보장은 2014. 3. 1일부터 효력을 진행하되 가입업무 지연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입의사 통보로 효력은 유효하다.
- 공제료 납부는 가입즉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집행에 사정에 따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보상은 어린이집별 공제회원가입을 전제로 효력이 발생하며, 피공제자 변동사항(인원 등)은 별도통보하지 않고 보상효력이 유지 된다.
단, 신규 어린이집의 경우 회원가입을 전제로 인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공제의 계약관리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 한다.
- 계약체결 후, 공제회는 OO구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장내용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
- 기타 조건 등 관련사항은 피공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협의 결정한다.

서울특별시 OO구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인)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8길 3 KCC IT타워 6층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 (인)



【붙임 2】

2014년 서울시 구별 단체가입 공제료

(단위: 명, 천원)

구 분	시 설	인 원		공제료 합계 (A+B)	들연사 (A)	영유아(방과후) 상해배상		
		영유아	방과후			소계(B)	영유아	방과후
전 체	6,747	240,289	4,049	1,218,021	26,867	1,191,154	1,175,013	16,156
강남구	225	9,458	33	47,425	1,044	46,381	46,250	132
강동구	333	12,273	49	61,565	1,355	60,210	60,015	196
강북구	207	8,674	142	43,951	969	42,982	42,416	567
강서구	425	14,605	211	73,889	1,629	72,260	71,418	842
관악구	302	11,215	194	56,869	1,254	55,615	54,841	774
광진구	237	8,550	150	43,365	957	42,408	41,810	599
구로구	357	12,502	219	63,407	1,399	62,008	61,135	874
금천구	204	7,456	196	38,082	841	37,241	36,460	782
노원구	560	13,883	288	70,594	1,558	69,036	67,888	1,149
도봉구	301	9,724	149	49,230	1,086	48,144	47,550	595
동대문구	228	8,547	191	43,517	961	42,556	41,795	762
동작구	239	8,757	204	44,620	985	43,635	42,822	814
마포구	239	8,266	256	42,379	937	41,442	40,421	1,021
서대문구	179	6,600	347	34,422	764	33,658	32,274	1,385
서초구	200	8,218	53	41,306	909	40,397	40,186	211
성동구	190	7,216	69	36,362	801	35,561	35,286	275
성북구	330	11,042	121	55,705	1,227	54,478	53,995	483
송파구	455	14,835	152	74,797	1,648	73,149	72,543	606
양천구	361	11,885	97	59,822	1,318	58,504	58,118	387
영등포구	264	10,107	139	51,104	1,127	49,977	49,423	555
용산구	130	5,026	129	25,658	567	25,091	24,577	515
은평구	367	13,749	262	69,818	1,541	68,277	67,233	1,045
종로구	75	3,808	131	19,576	433	19,143	18,621	523
중구	65	3,368	92	17,216	380	16,836	16,470	367
중랑구	274	10,525	175	53,342	1,177	52,165	51,467	698

※ 상품별 공제료 백원단위 절사